



2026년 8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

「울산대학교 학칙」 제43조의 3(학사학위취득 유예) 및 「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」에 의거하여, 2026년 8월 졸업가능자의 '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'을 안내하오니,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.

1.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

학부 학생이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일정한 동안 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

2. 신청대상: 2026년 8월 졸업가능자

(2026년 8월 최종 성적사정 결과 졸업학년초과자로 판정된 학생은 미해당)

※ 휴학 중인 졸업학년초과자, 학·석사 연계 과정자, 외국인 학생 등은 신청 불가

3. 신청기간: 2026. 7. 28(화) 13:00 ~ 7. 30.(목) 23:59 (※ 추가신청 불가)

4. 신청경로: UWINS ⇒ 성적·졸업 ⇒ 학사학위취득 유예 ⇒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

5. 유예기간: 유예 확정일로부터 2027년 8월 학위수여일까지

※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일 이후에는 취업 등 어떠한 사유로도 학사학위유예의 취소 및 졸업의 소급 적용 불가합니다

6.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안내

구분	세부 내용
유예기간	①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1회에 한하며 기간은 1년으로 한다. 단, 유예기간과 재학기간(휴학기간 제외)을 합하여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. ※ 재학연한: 8년. 단, 건축학전공 10년, 의학전공은 12년 ② 유예기간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유예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. ※ 신청시기: 1학기-7월, 2학기-1월
수강	① 수강신청 가능 ② 재수강 불가 (단, F나 U를 받은 과목에 한해 재수강 가능)
등록금	①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 납부한다.(수업연한초과자의 등록금과 동일) ②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. ③ 정규학기 수강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해학기 수강이 취소되며, 다음 학기(계절수업 포함)에도 수강신청이 불가함.
제한 사항	① 휴학 및 자퇴 불가 ② 복수전공, 연계전공, 부전공, 연계부전공, 마이크로특화전공 취소 불가 ③ 학점취소 불가 ④ 과목 이수구분 변경 불가 ⑤ 특별학점 취득 불가
학적 분류	학적 상태는 재학 또는 휴학이 아닌 '학사학위취득 유예'로 별도 분류되며, 재적생에는 포함됨
취소 불가	학사학위취득 유예가 확정된 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.

7. 유예 관련 일정 안내

구 분	기간	비고(경로)
졸업 가능 여부 조회	7. 27.(월) 13:00 ~	- 경로 : UWINS / 학적변동 / 개인정보 / 학적기본조회 ⇒ '예정상태', '최종변동상태' 확인 ※ 졸업가능자 ⇒ 예정상태 '졸업예정' 졸업불가자 ⇒ 최종변동상태 '졸업학년초과'
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(졸업가능자)	7. 28.(화) 13:00 ~ 7. 30.(목) 23:59	- 경로 : UWINS / 성적·졸업 / 학사학위취득 유예 ⇒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※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1회에 한하며 기간은 1년, 유예기간 중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을 통해 6개월 단축 가능
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	7. 31.(금) 14:00	- 경로 : UWINS / 학적변동 / 개인정보 / 학적기본조회 ⇒ '최종변동상태' 확인 ※ 최종변동상태: '학사학위취득 유예'
최종 졸업 확정	8. 4.(화) 13:00	- 경로 : UWINS / 학적변동 / 개인정보 / 학적기본조회 ⇒ '예정상태', '최종변동상태' 확인 ※ 졸업가능자 ⇒ 예정상태 '졸업예정' 졸업불가자 ⇒ 최종변동상태 '졸업학년초과'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⇒ 최종변동상태 '학사학위취득 유예'
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2026-2학기부터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납부함(수업연한초과자의 등록금과 동일) ※ 재수강 불가 (단, 재수강은 F나 U를 받은 과목에 한해 가능) ※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등록금은 부과되지 않음		

8. 유예관련 FAQ

Q1. 유예확정일 이후 취업으로 인해 '학사학위취득 유예' 취소가 가능할까요?

A1.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일 이후에는 취업 등의 사유로 **학사학위유예의 취소 및 졸업의 소급 적용이 불가**하므로, 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. **특히, 가까운 시일 내로 졸업을 전제로 한 취직이 예상되거나 취직을 준비 중인 학생은 신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**

Q2.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, 6개월만 유예가 가능한가요?

A2.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신청 시, 졸업시기가 1년(2학기) 미루어지게 됩니다. 하지만 6개월(1학기) 후 졸업을 하고자 한다면, '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'을 통해 6개월 후 졸업이 가능합니다.

Q3. '학사학위취득 유예자'와 '졸업학년초과자'는 무엇이 다른가요?

A3.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졸업만 미루는 것으로서 1년 간 학사학위취득 유예라는 별도의 학적상태로 유지됩니다. 졸업학년초과자(구. 졸업유보자)는 졸업요건을 미충족하여 졸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. 향후 본인의 졸업불가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재학상태에서만 졸업이 가능합니다.(※ **휴학 중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졸업불가**)

구분	학사학위취득 유예	졸업학년초과
졸업 요건	충족	미충족
학적 변동	학적 변동 불가	학적 변동 가능
학적 상태	학사학위취득 유예	재학 / 휴학
졸업 시기	유예기간(1년)이 만료되는 학기	졸업요건이 충족되는 마지막 재학학기